

## 多國籍企業의 輸出에 對한 現地國의 租稅 및 補助金 政策에 關한 一考察

朴 東 烈

經營學科 專任講師

(1982. 6. 30 접수)

### 〈要 約〉

概存經濟理論의 見地에서 輸出稅 賦課는 富의 國內移轉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本研究의 1, 2장에서 多國籍企業의 輸出商品에 對해 現地國이 課稅(또는 補助金支給)함으로써 經濟厚生의 上昇이 可能하며 몇 가지 假定下에 輸出稅는 利潤稅率의 決定에 따라 變하다고 論하고 있다. 3, 4장에는 既存假定의 緩和에 따른 現象을 간단히 살폈고, 5장에서는 多國籍企業의 輸出商品에 對한 利潤稅와 輸出稅는 물론 輸出補助金을 통한 輸出增進은 現地國의 經濟厚生水準을 上昇시킨다고 結論지었다.

## A Study on Multi-National Firms' Exports and Host Country Commercial Policy

Dong Rhyul, Park

Dept. of Management

(Received June 30, 1982)

### 〈Abstract〉

During recent years multi-national firms (MNF)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xports of manufactures from some under-developed countries. These firms, being familiar with consumers tastes in developed countries markets and having the technical knowledge required to produce the goods that those consumers want, often have an advantage in the exports compared to the local firms in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This article is researched about the role of export taxes/subsidies and examined whether these policies can increase the economic welfare of the host country. The article may be looked upon as an extension of the standard theory of the optimum export taxes/subsidies.

Section II shows that the optimum rate of export tax will depend on the rate at which the host country may tax the profits of the MNF.

Section III extends the analysis to incorporate the influence of the firms transfer price.

Section IV briefly considers some further extensions of the analysis.

Section V summarises the main findings.

The text of the paper relies on a geometric exposition; an appendix gives algebraic proofs of the main propositions.

## I. 序 論

多國籍企業이 개발도상국가에 資本 및 技術投資를 통해 現地法人을 설립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에 크게 기여한 바는 周知의 事實이다. 즉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多국적기업의 현지법인은 선진국시장의 소비자 기호에 맞고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習得함으로써 現地國(Investment Host Country) 生產要素의 生産性과 要素所得을 높였고, 이러한 비교우위는 現地國으로부터 本國(Investment Parent Country)으로의 수출증진은 물론 제3국으로부터의 원자재수입 및 제3국으로의 제품수출에 크게 기여한 바, 이는 전 세계적 經濟厚生의 向上이 아닐 수 없다.<sup>(1)</sup>

그러나 現地國에 위치한 多국적기업이기에 그 정책에 있어서 現地國은 傍觀者로서만 있을 수 없다. 多國籍企業의 現地法人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그企業의 所有權이 거의 전적으로 外國(Investment Parent Country)에 있고, 輸出水準의 결정도 多국적기업의 범세계적 경영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企業에 대한 現地國政府의 政策原則은 國내 다른 기업에 대한 政策과는 根本的으로 다르다.<sup>(2)</sup> 이는 貿易으로부터 얻는 多國籍企業의 利益과 現地國이 얻는 利益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周知한 대로 企業의 株主가 現地國 國民이 아니기 때문이다.

本研究의 目的是 現地國 政府가 그들 國家에 誘致된 多國籍企業의 輸出品에 대하여 稅金을 賦課(또는 수출장려를 위해 輸出補助金을 지급)할 경우, 이 政策이 現地國의 經濟厚生을 높이느냐 하는 점이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矢正수출세(또는 수출보조금) 결정에 관한 기준이론을 연장하여 몇 가지 假定의 設定下에 새로운 결론을導出하였다.

제2장에서는 矢正수출세율(이는 輸出品 單位當賦課하는 從量稅를 意味한다)의 결정은 多國籍企業이 現地國에서 획득한 이윤세율에 따라 반비례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多國籍企業의 移轉價格이 변할 때, 多國籍企業의 利潤과 이에 따른 現地國의 利得(補助金支給과 이윤증대에 따른 수출증대 및 조세수입 증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2장에서 열거한 가정들이 완화되었을 때의 변화를 간단히 설명하였고 이어 제5장에서는 以上에서 論한 바를 要約하면서 結論을 치었다.

## II. 輸出稅와 利潤稅의 効果

多國籍企業은 本國 및 世界的으로 흘어져 있는 現地國에서 生產活動을 하는 過程에서 原資材 및 製品의 交易을 本國—現地國間에, 現地國—現地國間에 그밖에 本國—第3國 및 現地國—第3國間에 行한다. 이에 生產水準과 輸出水準 및 國제적으로 分散된 現地法人들間의 社內移轉價格은 多國籍企業의 純利潤을 極大化함을 제1의 目的으로 한다.

여기에서 分析하고자 하는 現地國의 輸出稅賦課(반대로 輸出補助金支給)의 現地國 經濟厚生增進與否는 論理的 出發을 위한 몇 가지 假定을 設定함으로써 可能하다.

(1) 가장 重要한 假定으로, 現地國에서 生產, 輸出되는 製品의 量은 多國籍企業 全體의 水準에서 보면 极히 일부이며, 따라서 國際貿易市場에서 形成된 多國籍企業의 市場價格(즉 限界收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完全競爭狀態下에 있다는 假定이다. 이假定에서 價格은 이미 주어진 變數이므로 現地國은 輸出量決定에만 政策을 集中하게 된다.

그밖에 理論展開上 다음 假定들도 設定하는 바, 제3장부터 이 가정들이 하나씩 완화될 때 나타나는 변화를 分析한다.

(2) 利潤稅는 없다.<sup>(3)</sup>

(3) 輸出品의 移轉價格은 輸出의 限界收入과 같다.

(4) 現地國에서의 각종 세금부가는 移轉價格의 變化를 招來하지 아니한다.

(5) 現地國에서의 生產品은 全量 輸出한다.

(6) 現地國은 이미 完全雇傭狀態에 있으며, 수출세부과(보조금지급)로 나타나는 수출감소(증가)는

(1) 多국적기업과 Host Country間의 관계와 문제는 개발도상국가에만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分析은 R. Krishnamurti, "Some Effect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ereconomics*, December 1973, pp. 3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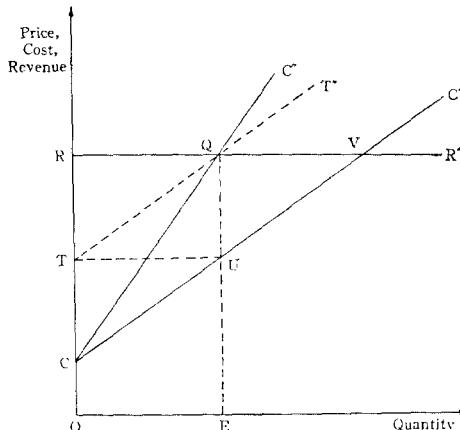
(2) 潘柄吉著, 多國籍企業論, 제10장 제2절, "소유권과 차본구조", 博英社刊, pp. 233~243.

(3) 王을 배당금, 토양세, 이자지급 및 사례지급 등에 대해서도 일단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을 가정한다.

現地國의 要素市場과 外換市場에 균형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한다.

(7) 現地國 國民 및 政府는 多國籍企業의 株式을 전혀 所有하지 아니한다.

(8) 第3國은 多國籍企業으로부터의 輸入에 아무런 장벽을 세우지 아니한다.



〈그림 1〉

〈그림 1〉에서  $CC'$ 線은 現地國 生產에 있어서 多國籍企業의 長期限界費用曲線인 바, 이는 곧 多國籍企業의 現地國에 대한 費用을 意味한다.<sup>(4)</sup>

$OR$ 은 輸出市場에 있어서 균형 한계 수입이며, 現地國의 總生產量은 多國籍企業의 全生產量 중에 극히 일부라고 가정하였으므로 現地國이 輸出市場에서 直面하는 限界收入線  $RR'$ 는 完全彈力의이다.<sup>(5)</sup>

이윤극대화를 위해선 현지국의 한계비용이 수출시장에서의 한계수입과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상태에서 기업은  $RV$  만큼 생산하며, 이때 기업의 총이윤은  $CRV$ 이다. 이는 移轉價格이 限界收入과 같음을 假定했기 때문이며, 이 단계에서 現地國은 貿易으로 인한 아무런 利得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現地國은 수출세를 부과함으로써 利得을 취할 수 있다. 이때의 과세기준은 稅收를 극대화하는데 있다. 즉 稅收의 極大化는 租稅政策의 効率狀態이다. 예를 들어 수출품 단위당  $QU$  만큼의 수출세를 賦課한다면 限界費用曲線은  $TT''$ 가 되어 輸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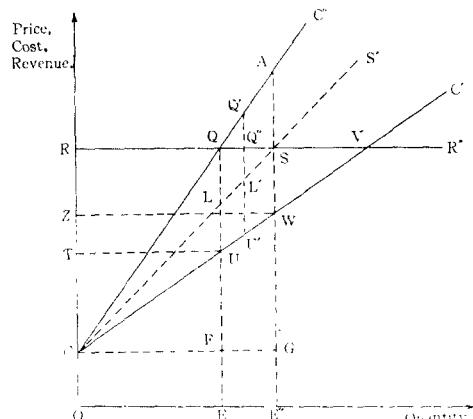
量은  $RQ$ 로 감소하겠고 現地國은  $TRQU$ 의 稅收를 얻게 된다.

總收入을 극대화시키는 稅金은 다음과 같다.  $CC'$ 線과  $RR'$ 線의 수직거리차이는 輸出品 單位當 稅收를 나타내며,  $CC''$ 線을 그으면,  $CC''$ 와  $RR'$ 의 수직거리차이는 限界稅收를 나타낸다. 그림을 다시 설명하면  $Q$ 點에서의 平均稅收는  $QU$ , 限界稅收는 零이다. 그러므로 면적  $CRQ$ 는 極大化한 輸出稅를 나타내는 바, 이는 現地國이 多國籍企業으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수출품 단위당  $QU$ 의 세금부가는 輸出水準을  $RQ(=OE)$ 로 줄여 기업의 이윤을  $CQU(=CTU)$ 로 감소하는 결과가 되었다.<sup>(6)</sup>

다음으로 利潤稅를 賦課할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다음에 열거하는 論理들로 해서 일단 利潤稅率이 주어졌다고 하고, 이 주어진 이율세율과 수출세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세부과의 목적 즉 조세수입극대화를 論할 수 있다.

輸出稅의 賦課는 2가지 効果가 있는 바, 수출세는 직접적으로 稅收를 증대시키지만, 동시에 輸出量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多國籍企業의 總利潤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아 결국 利潤稅收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輸出稅의 賦課는 항상 利潤稅와 병행하여 설정하여야만 조세부과의 목적이 달성된다.

우선  $QU$  만큼 수출품 단위당 과세했을 때, 稅收極大化를 위해선 한계수출세의 증가가 한계이율세의 증가와 같아야 한다.



〈그림 2〉

(4) 여기에서 1차함수, 즉 직선으로 표시한 것은 기하학적인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5)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현지국은 단지 生산지이므로 수입은 일단 本國으로 돌아간다. 고로  $RR'$ 線은 현지국에 대한 한계수입선이 아니다.

(6) 여기에서의 수출세는 수출품 단위당 과세하는 종량세(specific terms)인데, 종량세가 책택된 이유와 종가세로 대치할 경우의 균형변화는 후술하였다.

<그림-2>는 이 문제를 論하고 있다. 이윤세율은  $CS'$ 로 표시되어 있고 이때 세율은  $\frac{QL}{QU} = \frac{Q'L'}{Q'U'}$ 이다. 만일 수출세가 단위당  $QU$ 라면 현지국의 輸出稅收는  $CRQ$ 이고  $CQU$ 는 다국적기업의 이윤인데 이 때  $\frac{QL}{QU}$ 의 이윤세율을 부과하면  $CQL$ 이 이윤세로 現地國에 귀속되므로 기업의 순이윤은  $CLU$ 로 줄어든다. 여기에서 수출세를 감소시키면 이윤세는 증가하게 된다. 즉 수출세를  $Q'U'$ 로 감소시킨다면, 輸出稅收의 한계감소(Marginal decrease in export tax revenues)는  $Q'Q''$ 이고, 종이윤의 한계증가(Marginal increase in gross profits)는  $Q'U'$ 가 되어 결국 利潤稅收의 跟界增加(Marginal increase in profits tax revenues)는  $\frac{Q'L'}{Q'U'} \times Q'U' = Q'L'$ 가 된다.  $Q'Q'' < Q'L'$ 이므로 수출세는 계속 줄어들어 결국 과세의 적정수준은  $SW$ 가 될 것이다. 이때 수출세수에 있어서 한계감소  $AS$ 는 利潤稅收의 한계증가  $\frac{AS}{AW} \times AW$ 와 같다. 그 결과 적정수출수준은  $OE''$ 가 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윤세율이 높을수록 균형점  $S$ 는 좀 더 오른쪽으로 옮길 것이고, 이윤세율이 낮을수록 왼쪽에 위치할 것이다. 이윤세가 없을 때에 비하여 現地國의 輸出稅收는  $QAS$ 만큼 감소하였으나, 새로 운 利潤稅收가  $CAS$ 만큼 생겨 결국 稅收增加는  $CQS$ 가 되었고 總稅收는  $CRQ + CQS = CRS$ 가 되었다. 이윤세율이 높을수록  $CRS$ 가 넓어지는는데 이는 현지국이 낮은 이윤세율과 높은 수출세율을 조화시켜는 것보다 그 반대로 높은 이윤세율과 낮은 수출세율을 조화시키는 것이 稅收入增大면에서 効果의 의미이다. 그러므로 現地國은 높은 利潤稅率을 계정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윤세율의 上昇을 가로막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다국적기업의 속성중에는 다른事情이 同一한限, 높은 순이윤이 기대되는 국가에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다.<sup>(7)</sup> 다국적기업의 입장에서 순이윤은 낮은 수출세와 높은 이윤세율을 조화시키는 국가보다 그 반대의 경우를 택하는 국가에서 그

게 나타날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면  $CQU$ 의 면적은  $CSW$ 의 면적보다 크다.<sup>(8)</sup> 달리 말하면, 낮은 이윤세율을 부과하는 國家는 菲盈적으로 높은 수출세를 책정하는데 多國籍企業으로서는 이러한 國家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 투자유치를 경쟁하는 입장에 있는 개별도상국이라면 다국적기업이 그들 국가내에 현지법인을 設立하도록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선 다른 경쟁국보다 낮은 이윤세율을 내세울 것이다.

이윤세율을 저지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는 現地國 정부의 두차별적 기업정책에 있다. 즉 現地國政府는 國內企業과 多國籍企業의 現地法人을 크게 차별 두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多國籍企業에 대한 세율은 國內企業의 수출품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아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이윤세율 저지의 큰 요인은 그 것은 本國의 稅率이다. 만일 現地國이 本國의 경우보다 이윤세율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多國籍企業은 移轉價格을 낮춰 책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조세부담을 덜으려 할 것이다.

여덟든, 지금까지 分析의 측점은 적정수출세 수준은 이윤세율이 얼마나 주어졌느냐에 달려있고, 이윤세율이 높을수록 적정수출수준은 낮아진다는데 있다.

利潤稅에 대한 分析을 마치기 전서 非現實의 이지란 100%의 利潤稅率을 책정한 경우를 상상하여 보자. 이는 輸出로부터 發生하는 多國籍企業의 全利潤을 現地國의 稅金으로 돌린다는 것이다.前述 한 바와 같이 輸出稅賦課은 總利潤을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利潤稅收를 축소시켜, 결국 輸出稅收로 얻는 現地國 利得은 利潤稅收下落으로 더 적어진다. 그로 利潤稅만 100% 賦課한다는 것은 輸出稅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는 論理이다. <그림 2>로 說明하면  $CS'$ 線은 오른쪽으로 移動하여  $CC'$ 線에 접하고 이에 따라  $S$ 點은  $V$ 點과 일치된다. 그리하여 적정수출수준은  $RV$ 가 될 것인바,  $RV$ 는 자유무역상태에서의 균형점이다.

비록 100%이윤세율의 적용은 전혀 非現實의 이지

(7) Thomas W. Allen, *Direct Investment of United States Enterprises in Southeast Asia*, The Economic Cooperation Center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 (ECOCEN), Study No.2, Bangkok, March 1973, p.3.

(8) 이는 다음과 같이 중정할 수 있다.  $CQU = (CQF - CUF) = \frac{1}{2}CF(FQ - FU) = \frac{1}{2}TRQU$

$$CSW = (CSG - CWG) = \frac{1}{2}CG(GS - GW) = \frac{1}{2}ZRSW$$

— 그러나  $TRQU$ 는  $CRV$ 에 들어갈 수 있는 사각형 중 제일 면적이 크므로  $CQU > CSW$

만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이 결과는 매우 홍미로운 현상이다. 왜냐하면 수출세의 무역에 대한 영향을 순수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이윤세율과 순수이론의 결론은同一하다.<sup>(9)</sup> 이同一한 결론에의 도달은, 둘 모두 輸出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利潤은 現地國에 귀속된을假定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sup>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의 수출세부과에 대한 순수이론을 확대시켜 지금까지 分析한 수출세와 이윤세율의論理를一般化시켜 보자. 만일 輸出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利潤이 수출하는 國家에게 귀속된다면 가장効率的인政策은自由貿易이다. 그러나 利潤의一部 혹은 全體가外國人(또는外國企業이나外國政府)에게 돌아간다면 現地國은 輸出稅를賦課함으로써 利得을 얻을 수 있다.

本章의 結論으로서 크게 강조하는 바는, 적정수출세의 부과가 가장 좋은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가) 좋은 정책은自由貿易을許用함으로써兩者間に 한 켜긴 利得을極大화하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하여多國籍企業으로부터 텁·샘·페이먼트(Lump-Sum Payment)를 양도 또는 買入하는 것이다. 텁·샘·페이먼트의 양도 또는 매입은兩當事者の企策運營을効率化한다는 면에서 輸出稅賦課보다는 물론 가장理想的的政策일 것이다. 그러나現實적으로 텁·샘·페이먼트의 양도 또는 매입은長期間의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므로 실제로完全한 양도 또는 매입의 가능성은 零에 가깝다. 설사 매입 또는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비용조건이나 수요조건이 변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텁·샘·페이먼트의 양도 및 매입은 시한부적인 수밖에 없다.

이에 의해 적정수출세의 부과는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長點이 있다.

### III. 移轉價格의 上昇效果

多國籍企業間의社內移轉價格이輸出品의限界收入과同一하다는前章에서의假定은기하학적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게 하지만 일반적이지 못하고分析의範圍을 특수한 경우에로局限시키는 폐단이 있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이 가정이 완화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分析한다.

여러學者들이 지적한 대로, 多國籍企業은 그들의世界的순이윤이국내화되도록, 또 위협이국내화되도록 이전가격을 설정하여함과동시에그가격수준이편리된고든나라가받아들일수있는범위내에서책정하라고한다.<sup>(11)</sup> 이는곧국제무역시장에서의이전가격은관계당사국가들이받아들여질것이라는근제하에, 또 위협율이최저수준이라는판단하에높아지려는경향이있음을의미한다. 그러므로多國籍企業商品의市場價格, 곧移轉價格은그商品의限界收入을약간초과하는線에서결정된다.

여기에서나타나는문제는이가격이수출세(또는보조금)결정에어떤영향을주는가이다.

이전가격이한계수입을초과하면기업의이윤은더커질것이다. 그러나이는이윤을국내화시키는수출수준에영향을주지못하고, 따라서輸出稅收入은변함이없다. 다시말하면높아진이전가격에대하여수출세를일대로결정하여야하느나의문제는오토지상승한이윤에대해이윤세율을얼마로수정하느나의결과에따라결정된다. 그러므로이윤세가없다면적정수출세는변함이없다. 반대로이윤에대하여다세한다면수출세의감소는필연적이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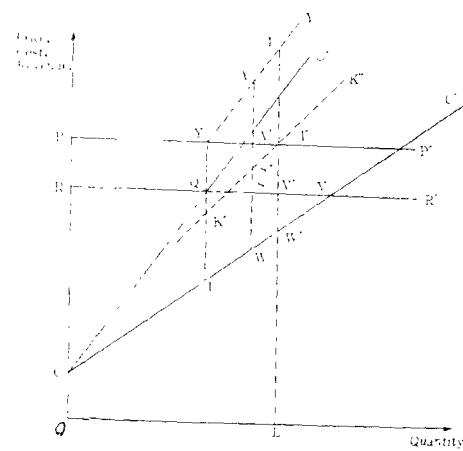
<그림 3>에서이전가격OP는한계수입OR보다높다. S點은그림2에서도출하였고, RS도역시그림2에서의균형수출량이다. 이전가격의상승은그수출수준에서限界利潤稅income을증가시킨다. 이는곧수출이증가하고수출세가감소함을뜻한다. 대체로수출세의바탕적인변화는두가지과정을밟아야한다. 첫째, Y점을Q점보다위에두고YY'를CC'에평행하게그으면YY'와PP'의수직거리는한계수출세수입을나타내는반면에YY'와CC'의수직거리는한계이윤을나타낸다.<sup>(12)</sup>

(9) 수출세, 보조금 등에 관한 순수경제이론에서의 분석은, 金信行著, 國際經濟論, 제10장, “수출세, 보조금, 수량한정 및 그 효과”에 나타나 있다. 法文社刊, 1977, pp. 239~253.

(10) 이때의 순수경제이론은 수출기업이 전적으로 그 국가의 국민에 의해 소유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윤의 현지근거는 당연하며, 수출세부과는 결국 기업에게 돌아갈 이윤이 정부로 이전되는 결과이므로 이는 한 국가내에서의 富移轉이다. 고로 수출세부과로 인한 수출국가의 경제후생증진은 없다고 보고 있다.

(11) Stefan H. Robock, *Int'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60430, 1977, p. 216, pp. 465~467.

(12) 수출수준이 RS이면, 輸出稅收의 한계감소는A'A'', 이전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는A''W, 고로 이윤의 한계증가는A'W.



〈그림 3〉

율세,  $K'K''$  線을 그으면  $\frac{YK'}{YU} = \frac{JJ'}{JW'}$  는 이윤 세율을 나타내 주는데 이때 바람직한 수출수준은  $PJ' (= RV')$  가 된다. 한편 이윤세수입의 추가분은  $\frac{JJ'}{JW'} \times JW'$  인데 이는 수출세수입의 감소분과 같다. 그러므로 수출세의 적정수준은  $V'W'$  이다.

이전가격의 상승에 따라 현지국이 얻는 이득은 간단히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종전수출수준에서의 利潤稅收入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즉 증가된 이윤  $RPA'S$  의 일정비율이 利潤稅로 현지국에 귀속된다. 둘째, 세로운 적정수출수준으로 수출세가 조정됨으로써 이득을 얻는다. 이 利得은  $S''A''J'$  렬기으로 표시된다.<sup>(13)</sup> 어느 주어진 이전가격에서 이윤세율을 높이 재정할수록 이를 각각의 이득은 커진다.

이전가격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수출세의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은 그림 3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전가격의 상승으로 이윤이 상승하면 이윤세가 인상되고 輸出稅收가 감소하여 總稅收入은 증대되며, 결국 기업은 수출세를 낮춤으로서 總收入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데, 이는 企業으로 하여금 輸出과 利潤을 증대케 하고 이에 따라 利潤稅收는 높아지게 된다. 실제 높은 移轉價格을 주장하는 舉者들은 自由貿易政策, 심지어는 무역 확대를 위한 輸出補助金 지원을 요구하는데, 이는 以上에서 살펴본 대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 즉 수출보조금

(13)  $S''A''J'$  는  $S''A'JJ'$  에서  $A''A'JJ'$  를 뺀 것이다.  $S''A'JJ'$  는 이윤세수의 증가분이고,  $A''A'JJ'$  는 수출세수의 감소분이다.

지급은 염연히 費用에 포함되지만, 同時に 수출을 고려함으로써 利潤稅收入 增大라는 利得을 現地國에게 제공한다. 고로 적정 수출보조금 지급은 관세비용과 한계이득을 같게 한다.

輸出稅賦課에 대한 分析은 補助金支給에 관한 分析을 반대로 說明하면 되므로 이에대한 자세한 分析은 생략하고 간단히 언급하면 보조금 지급과 반대로 수출세 인하는 수출증대, 이윤세 증가를 초래하여 現地國의 利得이 커진다.

本章을 결론짓기에 앞서 수출세(또는 보조금)가 移轉價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假定을 다시 한번 고려하여 보자. 수출세(또는 보조금)가 輸出稅單位當 일정 액수로 賦課(또는 支給)되는 從量稅의 원칙에서 설정되었다면 이 假定은 有効性 있는 假定이다. 왜냐하면 從量稅는 移轉價格과는 獨立의 으로決定되기 때문에, 現地國이 從量稅를 賦課하였다고 해도 多國籍企業은 이를 移轉價格의 變動變數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輸出稅(보조금 지급)가 移轉價格의 一定比率에 따라 賦課되는 從價稅라면, 이는 多國籍企業으로 하여금 移轉價格을 변경시키는 한 原因으로써 作用을 하여, 결국 多國籍企業은 移轉價格을 일동시킴으로써 每세계적 순이윤을 국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研究가 있다.

#### IV. 기타假定들의緩和效果

本章에서는 제 2장에서 열거한 假定 중 前述에서 緩和시킨 移轉價格 以外의 假定을 緩和시킨 때 輸出稅率의 적정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를 살펴보겠다.

만일 現地國의 生產品중 일부가 輸出되지 아니하고 現地國 消費者에게 供給된다면 輸出稅에 대한 分析은 稅收入 面에서 뿐 아니라 消費者剩餘의 变動에서도 고찰되어야 한다. 費用曲線이 증가하고 싶다는 假定下에서 內需充當水準과 이로인한 消費者剩餘水準은 輸出水準이 높을수록 낮아질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輸出稅는 總稅收入에 단향을 줄 뿐 아니라 消費者剩餘에도 利得을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輸出稅率은 國內流出이 있을때에 더 높다.

要素市場의 變化는 多國籍企業이 現地國 生產要 이윤세수의 증가분이고,  $A''A'JJ'$  는 수출세수의 감소분이다.

素에게 지불하는 要素價格과 이어한 生産要素들의 社會的 機會費用의 차이에서 온다. 多國籍企業으로부터 지불되는 要素價格이 相對적으로 높다면 輸出로부터 現地國이 얻는 厚生効果는 더욱 크며, 따라서 輸出稅는 要素市場의 鈍化변화가 없을 때보다 낮게 결정되어지며, 이는 自由貿易 내지는 輸出補助金支給을 강당화시키는 經濟論理의 근거가 된다. 外換市場의 均衡變化 역시 要素市場의 均衡變化와 같은 原理로 說明된다.

現地國 國民이 多國籍企業 現地法人의 株式을 所有하는 경우는 利潤稅를 賦課하는 경우와 비슷하여, 多國籍企業의 利潤이 一部 現地國으로 할당된다. 다만 利潤稅는 現地國 政府에게로 귀속되지만 株式에 대한 배당금은 民間人에게 돌아간다. 다만 이제 輸出稅의 적정수준은 現地國 株主에게 돌아가는 배당금과 總稅收入의 合計가 극대화되는 線에서決定될 것이다며, 現地國에 株主가 많을수록 輸出稅의 적정수준은 낮아질 것이다(非現實的인 假定이지만 現地國 國民이 株式을 100% 所有한다면, 이는 輸出稅에 관한 기본적인 經濟論理과 부합된다).

다음으로 輸入國에 의한 關稅賦課를 생각하여 보자. 第三國에 의한 關稅가 적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는 간단명료하게 일반화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關稅賦課의 効果는 本國製品에 대하여 賦課되었는가 또는 現地國製품에도 賦課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며, 모두에게 賦課되었다고 하더라도 同一하게 과세하였는가 또는 差別關稅를 채택했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상상할 수 있다. 즉 本國製품에 대해서만 과세되었을 때, 이는 現地國이 開發途上國이며 第三國이 일반협정 관세율(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을 채택한 例일 것이다. 特惠關稅(Preferential Duties)<sup>(14)</sup>는 多國籍企業으로 하여금 本國보다 現地國의 製品輸出을 증대시키는 効果가 있다. 그 이유는 本國製품에 대한 關稅賦課 내지는 現地國製품에 대한 特惠關稅 적용은 現地國의 均衡限界收入을 相對적으로 크게 만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現地國의 輸出量이 적정수준을 초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現地國은 輸出稅率를 引上

하여야 할 것이다.<sup>(15)</sup>

## V. 結論

本研究의 結論은 두 가지이다.

輸出稅에 관한 순수경제이론의 전해는, 규모가 큰 나라에서의 수출세부과는 費用으로 作用하므로 결국 그 國家내에서 富의 移轉(輸出企業으로부터 政府에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本研究의 첫째 結論은, 輸出이 外國人所有의 多國籍企業에 의해 修行되고 있고, 또 輸出을 통해 多國籍企業이 利潤을 얻고 있다면, 現地國은 규모가 작더라도 利潤稅의 輸出稅를 賦課함으로써 經濟의 厚生을 높일 수 있다는 點이다.

다음으로 現地國은 國내에 유치되어 있는 外國人所有의 多國籍企業에 대해 輸出補助金을 支給한다던 輸出은 크게 증진되었고 이에 따라 現地國의 經濟厚生도 커진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결론은 現地國의 効率的인 政策이 補助金의 支給보다 輸出稅賦課라고 한다면 輸出增進과 이에 따른 稅收增大를 追求하는 現地國은 經濟厚生에 있어서 損失이 있을 것이라는 點이다.

本研究는前述한 바와 같이 8가지 假定下에 輸出에 對한 조세 및 보조금정책에 관하여 論한 바이지만 8가지 假定의 紓和에 대한 實證的인 分析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또한 多國籍企業의 一般的인 特징인 로열티(Royalty), 억제규정(Restricted Clause)에 대한 고려도 소홀히 하였다. 다만 이를 變數의 固定을 假定했으므로 이에대한 계속적인 研究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부 록>

以上에서 論한 利潤極大化 條件 및 적정수준에 대한 數理分析을 살펴보자.

分析에 앞서 다음의 기호를 說明하면

$TC_q$ =現地國에서의 總費用

$C_q$ =現地國에서의 限界費用

$C_x$ =現地政으로부터 輸出品의 限界費用

$X$ =現地國으로부터의 輸出量

(14) 特惠관세란 특정지역에서의 수입에 대하여 통상관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할인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특혜관세는 대상에 따라 Colonial Preferential Duties와 Interstate Preferential Duties로 구분되며, 受惠向方에 따라 One-sided Preferential Duties와 Reciprocal Tariff로 구분된다.

(15) 現地國 利潤稅收의 見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한계수입보다는 이전가격이다. 제3국에 의한 관세장벽은 이전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가정하고 있다.

$TR_x$ =現地國 輸出로 内한 總收入

$R_x$ =現地國 輸出로 부터의 限界收入

$P_x$ =輸出品의 移轉價格

$t_x$ =輸出品 單位當 現地國의 輸出稅( 또는 수출보조금)

$t_x^*$ =각정수출세율( 또는 적정보조금율)

$TTR$ =現地國의 總稅收入

$\pi_g$ =現地國 輸出로 부터의 總利潤

$\pi_n$ =現地國 輸出로 부터의 純利潤

$t_h$ =現地國에 서의 利潤稅率

$t_f$ =제 3 國에서의 利潤稅率

먼저 다음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_x = C_q - t_x \quad \langle \text{제 1식} \rangle$$

$$\pi_g = P_x X - TC_q - t_x X \quad \langle \text{제 2식} \rangle$$

$$\pi_n = (1-t_h)(P_x X - TC_q - t_x X)$$

$$= (1-t_f)(TR_x - P_x X) \quad \langle \text{제 3식} \rangle$$

$$TTR = t_x X + t_h(P_x X - TC_q - t_x X) \quad \langle \text{제 4식} \rangle$$

(I) 利潤極大化의 條件：多國籍企業은 輸出品으로 부터의 純利潤이 極大화되도록 現地國으로 부터의 輸出量을 決定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d\pi_n/dX = 0$ ,  $d^2\pi_n/dX^2 < 0$ 의 두 조건이 필요하다. (제 3식) 을 변형함으로써 이를 유도하여 보자.

$$d\pi_n/dX = (1-t_h)(P_x - C_q - t_x) + (1-t_f)(R_x - P_x) \quad \langle \text{제 5식} \rangle$$

이를零으로 두고 다시 굽어보면

$$C_q + t_x = R_x + (P_x - R_x)(t_f - t_h)/(1-t_h) \quad \langle \text{제 6식} \rangle$$

本研究에서는 일단  $t_h = t_f$ 로 보았다. 그러므로 (제 6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시킴으로써 유도가 가능하다.

$$C_q + t_x = R_x \quad \langle \text{제 6-a식} \rangle$$

이윤극대화 제 2 조건은 (제 5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시킴으로써 유도가 가능하다.

$$d^2\pi_n/dX^2 = -(1-t_h)dC_q/dX + (1-t_f)dR_x/dX \quad \langle \text{제 5-a식} \rangle$$

限界費用은 채증하므로  $dC_q/dX > 0$ , 即 現地國은 多國籍企業 全體로 보던 구하一部이므로  $dR_x/dX = 0$ 이다. 그러므로 (제 5-a식)의  $d^2\pi_n/dX^2$ 은 負호 표시되어 제 2 조건도 만족된다.

(II) 適正輸出稅：現地國 政府는 總稅收入이 極大화되도록 輸出稅를 定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d(TTR)/dt_x = 0$ ,  $d^2(TTR)/dt_x^2 < 0$ 의 두 조건이 필요하다.

(제 4)식을 변형시켜 보면

$$d(TTR)/dt_x = (1-t_h)\{t_x(dX/dt_x) + X\}$$

$$+ t_h(P_x - C_q)(dX/dt_x) \quad \langle \text{제 7식} \rangle$$

이를零으로 놓고 정리하여 제 1 조건을 유도하면

$$(1-t_h)\{t_x(dX/dt_x) + X\}$$

$$= -t_h(P_x - C_q)(dX/dt_x) \quad \langle \text{제 7-a식} \rangle$$

비용은 채증하므로  $dX/dt_x < 0$ 이다. 제 2 조건은 (제 7식)을 변형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d^2(TTR)/dt_x^2 = (1-t_h)\{t_x(d^2X/dt_x^2)$$

$$- 2dX/dt_x\} + t_h(P_x - C_q)(d^2X/dt_x^2)$$

$$- t_h(dC_q/dt_x)(dX/dt_x) \quad \langle \text{제 7-b식} \rangle$$

限界費用線이 1차함수(직선)라 할은  $d^2X/dt_x^2 = 0$

임을 의미하므로  $d^2(TTR)/dt_x^2 < 0$ 이다. (만일 비용곡선의 기울기가 生產量增加에 따라 增加한다면  $d^2X/dt_x^2 < 0$ 이다. 그러나合理的見地에서  $P_x > C_q$ 이므로  $d^2(TTR)/dt_x^2 < 0$ 으로 볼 수 있다)

(제 6식) 또는 (제 6-a식)을 (제 7-a식)의 제 1 조건으로 대체한으로써 適正輸出稅  $t_x^*$ 를 구할 수 있다. (제 6식)을 사용하면,

$$(1-t_h)\{t_x + X/(dX/dt_x)\} = -\{t_h(P_x - R_x)\}$$

$$(1-t_f)\cdot(1-t_h) - t_h t_x \quad \langle \text{제 8식} \rangle$$

여기에서 適正率은

$$t_x^* = -t_h(P_x - R_x)(1-t_f)'$$

$$(1-t_h) - (1-t_h)X/(dX/dt_x) \quad \langle \text{제 9식} \rangle$$

만일 단순화된 (제 6-a식)을 利用한다면,  $t_f = t_h$  이므로

$$t_x^* = -t_h(P_x - R_x) - (1-t_h)X/(dX/dt_x)$$

$$\langle \text{제 9-a식} \rangle$$

(제 9식)과 (제 9-a식)은  $P_x \geq R_x$  일때  $t_x^* \geq 0$ 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즉 移轉價格이 限界收入보다 크면 輸出稅賦課은 必然的이며, 移轉價格이 限界收入보다 작으면 輸出稅賦課은 任意의이다.

## 參 考 文 獻

1. 金信行, 「國際經濟論」, 法文社刊, 1977年。
2. 潘柄吉, 「多國籍企業論」, 博英社刊, 1975年。
3. 朴大衛, 「貿易實務」, 法文社刊, 1981年。
4. 小宮隆太郎, 「多國籍企業と低開發國」, 「國際經濟學研究」, 岩波書店, 1975年, 또는 「多國籍企業と低開發國」, 「經濟學論集」第40卷 3號 1974年 10月。
5. 多國籍企業研究會 編, 「多國籍企業の國際統制」

- (1), (2), (3), (4).」「世界經濟評論」第20卷 4, 5, 6, 7號, 1975年。
6. 福田博 編, 「多國籍企業の行動指針, OECD宣言の解説」, 時事通信社, 1976年。
  7. Ball, George W., (ed) *Global Companies: The Political Economy of World Business*, Prentice-Hall Inc., 1975. 韓譯 朴替一. 「多國籍企業論」, 探求新書 202, 探求堂, 1977年。
  8. Corden, W.M. (1974). *Trade Policy and Economic Welfare*. Oxford University Press.
  9. Helleiner, G.K. (1973). 'Manufactured export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multi-national firms.' *Economic Journal* (March).
  10. Horst, T. (1971). 'The theory of the multinational firm: optimal behaviour under different tariff and tax rat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September).
  11. Katrak, H. (1977). 'Multi-national monopolies and commercial policy.' *Oxford Economic Papers* (July).
  12. Lall, S. (1973). 'Transfer-pricing by multinational firms.'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ugust).
  13. Nayyar, D. (1978).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manufactured exports from poor countries., *Economic Journal* (March).
  14. R. Krishnamurti, 'Some Effect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tereconomics*, December 1973. pp.362~63.
  15. Stefan H. Robock, *Int'l Busines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60430, 1977 p.216 pp. 465—467.
  16. Thomas W. Allen, *Direct Investment of United States Enterprises in Southeast Asia*. The Economic Cooperation Center for the Asia and Pacific Region (ECOCEN) Study NO.2, Bangkok, March 1973, p.3.
  17. UNCTAD (1978), 'Intra-firm transaction and their impact on trade are development. *UNCTAD Seminar Programme, Report Series No.2*, Geneva(May).
  18.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World Development*, New York, 1973 (ST/ECA/190).
  1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The Impact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Development and o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1974. (E/5500/Rev.1. ST/ESA/6).
  20. Vernon, Raymond, *Sovereignty at Bay: The Multinational Spread of U.S. Enterprises*, Basic Books, New York, 1971